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4. 4.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의 12인
- 나. 제출일자 : 93. 12. 7
- 다. 회부일자 : 93. 12. 23
- 라. 상정일자 : 94. 4. 22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시희준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제10조(준용규정)를 법률용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준용규정 용어의 자구를 수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10조(준용규정)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이외의"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정한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명확한 법률용어로 자구수정

3.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영세민이 노점상을 경영하므로써 범질서에 반하고 가로환경이 좋지않으므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들 영세 노점상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전업자금을 융자받아 전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임.

은행으로부터의 융자알선시에 이들이 부담해야할 이자중 일부를 구청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리우대자금과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임. 이 조례 10조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이외의"를 범제처 심사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함으로 하고, 뒷부분의 "정한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명확히 하는 자구수정내용임.

4. 토론요지

없음

5. 수정안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 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이외의"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정한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준용규정) <u>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의</u> <u>의의</u> 이자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u>정하는 바에 의한다.</u>	제10조(준용규정) <u>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u> <u>한</u> <u>를 준용한다.</u>